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355,269,000	10,658,070
일반회계		349,500,000	10,485,000
특별회계		5,769,000	173,070
	기타특별회계	5,769,000	173,070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81,000	23,430
	주차장사업특별회계	4,815,000	144,450
	지하수 관리 특별회계	173,000	5,190

- 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
-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586,907천원으로 한다. (일반예비비 3,311,822천원,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,000,000천원, 내부유보금 275,085천원)
- 제 4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,2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